

#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1727번
- 발 의 자 : 우형찬 의원(찬성자 12명)
- 발 의 일 : 2024년 4월 3일
- 회 부 일 : 2024년 4월 8일

### 2. 제안이유

-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우, 교육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실태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, 여성가족부는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반면, 서울시는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해, 조사 기간의 차이 및 정확한 수요 파악의 어려움이 있음.
- 이에 중앙정부의 실태조사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해, 타 유관기관 등에 보다 최신식의 실태조사 결과치를 제공하고, 타 기관에서 보다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또한,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주요 사항을 명시해, 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

### 3. 주요내용

- 실태조사 기간을 조정하고, 실태조사 사항 등에 대해 신설함(안 제5조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별첨 비용추계서 참조).

다. 입법예고(2024.4.12. ~ 4.16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,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, 실태조사 주기(2년)와 주요내용을 규정한 안 제5조를 신설하려는 것임.
- 안 제5조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,
  - 안 제5조제2항(제1호 내지 제7호)은 실태조사시 포함되는 항목(학업중단 시기와 원인, 건강상태, 가족·친구관계, 경제상태, 진로, 지원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)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
  - 안 제5조제3항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체 없이 연계하고,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·② (생략) <u>③ 시장은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</u>	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

④ (생략)

<신설>

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5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매 2년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
2.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태
3.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
4.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
5.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
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,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 ~ 제16조 (생략)

제6조 ~ 제17조 (현행 제5조부터 제16조  
까지와 같음)

※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(평생교육국)는 본 조례에 따라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에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로, 생활 실태,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.

#### <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 현황 >

- 사업명: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
- 사업목적
  -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
  -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적 욕구, 청소년시설 인지도 및 이용현황, 만족도를 파악하여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
- 추진현황: 2019,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
- 사업내용: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 추진,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적 욕구, 누적 총계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 재정비
- 사업예산: 100백만원(실태조사 용역)

출처 : 2022년 본예산 평생교육국 사업설명서

<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(2022.12.30.) >

-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30,540명 추정(출국자 44,497명 제외)
  - ※ 학업중단률 전국 0.8%, 서울시 1.1%
-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청소년 이행 경로 유형
  - 학업형(검정고시 등) 64.2%, 무업형 13.3%, 진로직업형 11%, 기타(청소년 시설 이용 및 운동·악기 등 취미활동, 군복무 등) 11.5%
-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청소년 생활 실태(연령별 응답률 최고 항목)
  - (7~12세) 대안교육기관 등교 45.7%, (13~15세) 집에서 공부 36.9%, (16~18세) 대학입시 공부 25.4%, (19세 이상) 아르바이트 및 취업 18%
-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
  - (학습) 검정고시 지원·입시정보 제공·대학진학 상담, (취업) 자격증 취득 지원·직업 및 진로적성 상담, (건강 및 상담복지) 건강검진 제공·고민 상담 등

출처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

- ※ 정부(여성가족부)는 2021년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제6조 실태조사 기간 3년 → 2년 변경, 2021.09.24. 시행)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.

< 2022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>

- 조사 명: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
- 법적근거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조사대상: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  - \* 7개 유형 기관 238개소 내 학교 밖 청소년 3,000명(표본수)
- 조사기간: 2023년 6월 ~ 12월
- 조사기관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한국리서치
- ※ 이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내일이룸학교, 청소년 쉼터, 소년원, 보호관찰소, 대안교육기관 및 검정고시 접수장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

출처 :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www.mogef.go.kr)

### ※ 실태조사의 개념과 실행주기

-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(학교 밖 청소년)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  - 실태조사 주기는 조사할 대상의 성격과 특성, 규모와 구조, 대상의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, 대상과 대상의 환경 등이 변화가 적을 경우, 조사 주기를 장기로, 그 반대의 경우는 단기로 설정할 수 있음.
  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, 서울특별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“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, 개개인 또는 유사한 환경 등으로 세분”하여 지원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바, 안정적 정책 마련,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과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시점까지는 실태조사 주기를 단기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사회에서 학습, 취업, 진로 및 재능 개발 등 각각 다른 환경에 있고 전체 조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, 조사 주기를 정부(여성가족부) 조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사 결과의 비교·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 도출 및 연계성을 제고하고, 보다 정확하고 연속성 있는 조사 시행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임.

### 나. 세부내용 검토

-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(3년 → 2년)할 경우 정부(여성가족부),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주기 차이로 발생하는 상이한 결과와 현황 등을 최소화하고 각 조사결과 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학교 밖 청소년에 처한 상황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○ 다만, 안 제5조제1항 신설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경우 (3년 → 2년) 10년간(2024년 ~ 2034년) 2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※ 실태조사를 2년 단위 실시하는 경우 1회 1억원의 예산(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기준)이 소요됨

< 실태조사 기간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비교 >

(단위: 억원)

구 분	합 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
현 행	4	1	-	-	1	-	-	1	-	-	1	-
개 정	6	1	-	1	-	1	-	1	-	1	-	1

※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예산 참고

○ 안 제5조제1항 실태조사 주기 변경(3년 → 2년)에 따라 정부(여성가족부)와 동일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(1안)와 1년의 차이를 두고 다른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(2안) 등 효과적인 실태조사 실행연도와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,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한 적정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< 정부 및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실시 주기 예상안 >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정 부	○	-	○	-	○	-	○
서울(1안)	○	-	○	-	○	-	○
서울(2안)	-	○	-	○	-	○	-

※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예산 참고



-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를 정부(여성가족부)와 동일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 (1안) 양자 간 비교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중 측정 방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 - 다만,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조사 자료를 얻을 수 없고 당해연도 결과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, 정부(여성가족부)의 조사 대상 및 내용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력이 중복 투입 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.
  
-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를 정부(여성가족부)와 다른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 (2안) 중복 예산 및 인력 투입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조사 결과의 연속성, 단년도 사업 편성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으나,
  - 정부(여성가족부)의 조사 목적·문항·결과 등이 상이한 경우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자료가 정부(여성가족부)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결과 활용성이 낮아질 수 있어, 정부와 협의 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각각의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  
- 안 제5조제2항은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실태조사 대상(학교 밖 청소년)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제5조(실태조사)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
2.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태
3.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
4.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
5.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
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안 제5조(실태조사)제3항은 ‘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’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제5조(실태조사)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,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- 안 제5조제3항은 ①청소년 지원센터 연계, ②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보다는 지원사업 또는 청소년 보호 등과 연관된 규정으로 보이며,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등은 본 조례 제3조,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어, 불필요한 규정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- 또한, ‘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’의 구분 또는 기준은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바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하며,

- 발견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"학업 복귀"가 아닐 수 있음에도 지원의 목적에 학업 복귀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실태조사 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발견의 주체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이며, 실태조사 기관과 담당자가 즉각적인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에 한계가 있고,
  -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바,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성, 실태조사의 사업 범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다. 종합의견

- 결론적으로, 본 개정안은 정부(여성가족부)와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주기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비교·분석 가능한 결과치 제공과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 등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실태조사의 시행시기를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 재원의 부담, 중복적 지원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전 문 위 원	정 찬 일	입 법 조 사 관	김 준 년
---------	-------	-----------	-------